

## 가톨릭농민회 “과수 가농인증” 관리·생산출하기준(1차 추진기준)

### ❖ 목적

<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중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(2013/6/12)>에 따른 저농약 인증 폐지를 대체하는데 목적이 있다.

### ❖ 대상

1. 기존 저농약 인증 회원 2.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과수위원회 생산 출하

관리기준-1	비고
가. 관리(생산자)	<p>1) 경영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기록·보관하고 과수관리자 또는 과수소위원회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재배포장의 재배 사항을 기록한 자료: 품목명, 식재일, 수확일</li> <li>2) 농산물·임산물 재배포장에 투입된 토양개량용 자재, 작물생육용 자재, 병해충관리용 자재 등 농자재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: 자재명, 일자별 사용량, 사용목적,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증명하는 서류</li> <li>3) 농산물·임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을 기록한 자료: 품목명, 생산량, 출하처별 판매량</li> <li>4) 유기합성 농약 및 (화학)비료의 구매·사용·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: 자재명, 일자별 구매량, 사용처별 사용량·보관량, 구매 영수증</li> <li>5) 1)부터 4)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2년간으로 한다(무농약농산물은 최근 1년간으로 한다)</li> </ol> <p>2) 과수위원장 또는 과수 관리자가 심사를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 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.</p> <p>3) 인증품 생산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.</p> <p>가)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‘가농 과수인증 관리기준 및 생산출하기준을</p>


	<p>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나)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<u>교육</u>하여야 한다.</p> <p>다)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<u>예비산지점검을 하고 점검한 결과를 기록</u>하여야 한다.</p> <p>라) 가)부터 다)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<u>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</u>하여야 한다.</p>	
<p>나. 재배포장·용수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재배포장의 토양은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, 잔류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.</li> <li>2)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·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li> <li>3) 재배포장은 <u>인증받기 전에 재식 전 2년의 기간동안 과수소위원회 생산출하기준에 부합하게 재배방법을 준수</u>하여야 한다. 다만, <u>과수관리자가 실시한 예비산지점검 결과를 과수소위원회가 검토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</u> 이 경우에도 <u>전환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</u>이 되어야 한다.</li> <li>4) 용수는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및 「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하천·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 인 및 총 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하고, 하천·호소의 화학적 산소요구량(COD) 항목은 해당 작물 생육기의 평균 화학적 산소요구량(COD)을 기준으로 한다.</li> <li>5) 재배포장 주변에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이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, 재배포장 입구나 인근 재배포장과의 경계지 등 잘 보이는 곳에 <u>가능</u></li> </ol>	

	<p><u>과수인증 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</u>하여야 한다.</p> <p>9)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를 받은 재배지가 아니어야 한다.</p>	
다. 재배방법	<p>1) <u>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노력</u>을 지속해야 한다.</p> <p>2)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<u>퇴비·액비는 경축순환농법의 결과로 만들어지 퇴비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</u>하며, 그렇지 못할 경우 퇴비를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되, 과도한 사용,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</p> <p>3) <u>병해충의 방제는 “과수소위원회 생산출하기준”에 따라 방제</u>하여야 한다.</p> <p>6) 잡초는 다음의 방법으로 조절하여야 한다.</p> <p>가) 기계적 경운  나) 적합한 윤작체계  다) 예취  라) 식물·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역학적 수단  마) 동물의 방사</p>	
라. 생산물의 품질관리	<p>1) 인증농산물의 <u>저장 및 수송 시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</u>하여야 하며,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.</p> <p>2) 병해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.</p> <p>가)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,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 나)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·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</p> <p>3) 인증농산물과 그 외의 농산물을 혼합하여서는 안되며, 인증농산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4) <u>방사선</u>은 해충방제, 식품보존,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5) 인증농산물의 포장재는 「식품위생법」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 분해성, 재생품</p>	

	<p>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8) <u>잔류농약의 검사와 기준은 “ 과수소위원회 생산·출하기준”에 부합하여야 한다.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시 <b>회원은 과수관리자와 교구연합회(본부)에 즉각 사실을 통보하고 출하시 발생 내용과 함께 잔류농약검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출하허용 잔류농약 기준치는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.</b></u></p> <p>가)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 나)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 다)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</p>	
<p>마. 인증취소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영농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지 않거나 주요항목을 누락하는 경우가 지속될 경우</li> <li>2. 영농 경영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</li> <li>3. 영농 경영관련 자료를 과수관리자가 요구할 때 제공하지 않은 경우</li> <li>4.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인증품에 혼합하거나 이증종류가 다른 인증품을 혼합한 경우</li> <li>5. 가톨릭농민회 과수소위원회 생산·출하기준을 명백히 위반하였을 경우</li> </ol>	
<p>바. 기타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<b>병행생산</b>의 경우 구분 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</li> <li>2) 이 규정에서 정한 인증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해야 한다.</li> </ol>	
<b>관리 기준-2</b>		
<p>가. 관리자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교구별 과수가농인증 담당관리자를 1인 이상 선정한다.</li> <li>2. 등록 : 교구별 담당관리자는 과수소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.</li> <li>3. 관리자의 역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회원의 교육</li> <li>- 점검(사전, 사후)</li> <li>- 인증의 절차와 기록 보관</li> <li>- 인증관련 업무의 결과 정리 보고</li> </ul> </li> </ol>	

	<p>4. 관리자의 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증과 관련된 일정의 교육을 이수한 회원, 실무자</li> </ul> <p>5. 관리자 교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과수관리 담당자는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겸비해야 한다.</li> <li>·인정교육의 종류 :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27 499 1818 735"> <tr> <td data-bbox="427 499 1122 539">&lt;양성교육&gt;</td> <td data-bbox="1122 499 1818 539">&lt;보수교육&gt;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27 539 1122 735">농식품공무원교육원, (사)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협회, IOIA,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,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일정 교육 수료</td> <td data-bbox="1122 539 1818 735">농식품공무원교육원, (사)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협회, IOIA,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,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일정 교육 수료</td> </tr> </table>	<양성교육>	<보수교육>	농식품공무원교육원, (사)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협회, IOIA,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,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일정 교육 수료	농식품공무원교육원, (사)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협회, IOIA,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,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일정 교육 수료	
<양성교육>	<보수교육>					
농식품공무원교육원, (사)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협회, IOIA,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,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일정 교육 수료	농식품공무원교육원, (사)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협회, IOIA,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,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일정 교육 수료					
나. 관리점검	<p>1. 산지점검(정기, 비정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산지 점검을 실시한다.</li> <li>- 정기점검은 연1회 실시한다. : 정기점검은 신뢰의 확보를 위해 도·농이 함께 진행한다.</li> <li>- 조사자의 구성은 별도로 협의한다.</li> <li>- 조사의 원활함을 위해 점검체크리스트를 제작한다.</li> <li>- 정기점검 이외의 점검은 교구연합회(본부)차원에서 과수관리자와 교구과수위원장이 실시한다.</li> </ul> <p>2. 예비심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수관리자는 신규인증 회원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·기록·과수위원회에 보고한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점검자의 구성 / 선정 방법 / 시기</li> <li>·점검리스트</li> </ul>				

	<p><b>3. 재심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생산회원은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심사과정 중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과수관리자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</li> <li>- 생산회원은 재심사요청서를 통해 재심사 부분을 명확히 설명한다.</li> <li>- 교구 과수관리자는 상황을 파악하여 교구과수위원회(장)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교구과수위원회는 재심사여부 및 재심사 후 결과를 과수위원회에 보고한다.</li> <li>- 재심사 결정이 난 후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한다.</li> </ul>	
다. 관리양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생산회원은 생산과정의 경영관리내용을 영농일지에 작성해야한다.</li> <li>- <b>필수기록항목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품목명</li> <li>- 토양개량용 자재의 사용</li> <li>- 작물생육용 자재의 사용</li> <li>- 병해충관리 자재의 사용</li> <li>- 기타 농자재의 사용</li> <li>- 기본 영농(제초 등)</li> </ul> </li> <li>·<u>구입</u> : 자재명, 구입처, 구입량, 구입영수증</li> <li>·<u>사용</u> : 사용량, 보관량</li> <li>·<u>생산·출하</u> : 품목명, 생산량, 출하처별 판매량</li> <li>·생산회원은 인증품 생산계획서를 작성하고 과수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li> <li>·인증품 생산계획서(회원용) - 매년 1월 말일까지</li> <li>·인증심사 체크리스트(과수관리자+도농점검용)</li> <li>·인증심사 결과보고서(과수관리자용)</li> <li>·예비심사 보고서(과수관리자용)</li> <li>· 인증 재심사 요청서(회원용)</li> </ul>	

	· 인증서 · 인증표지(필지용)	
라. 인증마크		· 표시방법 - 위치, 크기, 문구

### 3. 생산·출하기준

마. 생산출하기준	과실	<p>공통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저농약 재배 이상</li> <li>- 화학 합성농약사용금지품목: 유기인계, 카바메이트계, 합성피레스로이드계, 항생제, 생장조절제, 낙과방지제, 착색제 등 고독성, 발암성농약</li> <li>- 부패과, 변지과, 상해과, 동해과, 과숙과, 미숙과, 이종과, 병충해과 (피해가 과육까지 미친 것), 이물이 묻어 있는 것은 출하금지</li> <li>- 분회별 공동 방제력을 반드시 사용해야함. (개별생산자는 교구본부 또는 과수위원회에서 규정한 방제력 참조) <b>: 개별생산자는 교구본부에 분회방제력으로 등록하고 과수위원회에 등록해야함.</b></li> <li>- 재배 중 심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전국 생명농업실천위원회에 신고하고 논의 후 처리한다.</li> <li>- 모든 과수의 화석연료를 통한 가온재배는 허용하지 않는다.</li> </ul>
		<p>포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농약 재배 이상, 화학비료 사용금지</li> <li>- 송이크기는 구분없이 포장.</li> <li>- 골아서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은 출하제외</li> <li>- 당도는 품종별로 캠벨 14브릭스, 거봉 15브릭스, 청포도 13브릭스 이상으로 출하.</li> <li>- 포장단위 : 4kg, 2kg</li> </ul>
		<p>사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화학합성 농약방제 7회이하. 화학비료 사용금지 (단, 유목과 일부 미량요소 결핍나무에만 소량사용)</li> </ul>

<p>마. 생산출하기준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화학합성농약 금지목록 이외의 화학합성농약 사용은 <b>7회</b> 이하로 함.</li> <li>- 석회보르도액, 유황합제, 난황유, <u>미생물 제제</u> 등 천연재료는 필요에 따라 사용</li> <li>- 벌레 먹은 것, 썩은 것 제외</li> <li>- 포장은 크기에 따라 선별하지 않는다. 단 명절시기에는 등급을 정해 선물용으로 선별 포장 할 수 있다. 품종별 최소 중량적용</li> <li>- 아오리150g 이상/홍로,홍월,히로사키 부사 등 180g 이상 (기준 이하 별도협의)</li> <li>- 포장단위 : 3.5kg, 5kg, 10kg,15kg,20kg 등</li> </ul>
	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화학비료 사용금지</b></li> <li>- 크기에 따라 등급을 구분함 (7.5kg 기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화산배 大 11개이하, 中 12-13개, 小 14-15개</li> <li>· 신고배 大 7-9개이하, 中 10-11개, 小 12-14개</li> </ul> </li> <li>- 포장단위 : 일상공급용 : 3.5kg 선물용 : 7.5kg</li> <li>- 무농약 이상의 경우에는 포장단위를 별도 협의한다.</li> </ul>
	복숭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화학합성 농약방제 3회이하</li> <li>- 크기에 따라 등급화하지 않음 (품종별 날개의 최소 무게적용)</li> <li>- 무르는 품종은 포장할 때 완충망 사용</li> <li>- 출하단위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·만생종 : 저농약 3kg 12과 기준, 무농약 이상 2kg 9과 기준 / 200g이상</li> <li><b>조생종 : 저농약 3kg 14과, 무농약 이상 2kg 10과 기준 / 180g 이상</b></li> </ul> </li> <li>- 포장단위 : 저농약 3kg 무농약이상 2kg</li> </ul>
	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화학합성농약 방제 3회 이하</li> <li>- 발아과는 출하금지</li> <li>- 크기에 따라 등급을 구분함.(대. 특대)</li> </ul>
<p>마. 생산출하기준</p>		

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품종: 단택, 이평, 석주, 만적을 기본으로 함.</li> <li>- 출하시기에 따른 가격 차등 없음</li> <li>- 각 품종별로 최소무게를 달리 적용하며 조생종의 경우(단택,이평 등)은 날개 무게 최소15g이상 중만생종(석주,만적 등) 17g 이상 출하한다.</li> <li>- 출하단위 : 40kg</li> <li>- 포장단위 : 1kg, 2kg, 4kg</li> </ul>
	감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농약 재배이상</li> <li>- 에틸렌, 아세틸렌 등을 상용한 인위적인 후숙처리 금지</li> <li>- 일정크기만 정상출하 (둘레지름 4~8cm, 개당 150~50g) 나머지는 별도처리</li> <li>- 출하할 때 왁스 코팅처리 금지</li> </ul>
	기타 과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감 : 화학합성농약사용은 3회 이하. 최소 125g 이상 출하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홍시용감 : 무농약재배 이상. 평균 1합3지 이상만 출하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참다래 : 무농약재배 이상, 인위적 후숙처리 금지, 최소 60g 이상 출하, 바람이 들어 육질에 동공이 생긴 것은 제외.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청매실 :</li> </ul> <p><b>&lt;선별·출하기준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선별기 최저 규격은 제외한다. 직경 16mm 이상 출하</li> <li>·미성숙과, 과숙과, 점박이(오염과), 함몰과, 과피와 과육이 손상된것, 병해충과 출하금지</li> <li>·출하 시 수확 후 1일 이내 공급</li> <li>·포장시 약 500g정도 추가 포장(10kg 기준)(5kg은 500g 이하)</li> </ul> <p><b>&lt;매실분과 출하제재 기준&gt;</b>2013/11/19 매실분과 2013/12/30과수소위원회 2014/1/6생명농업실천위원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토양, 묘목관리 부실로 매실의 품질이 나쁠 경우</li> </u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분과차원의 산지점검 실시</li> </ol>

2. 분과회의를 통해 개선에 필요한 기간설정, 출하량등의 조정

● **선별 및 출하기준 미 준수 시(회원별)**

1. 총 공급수량에 3%이상 반품 발생시 다음해 50% 출하 금지
2. 총 공급수량에 5%이상 반품 발생시 다음해 100% 출하 금지
3. 같은 내용으로 2회이상 분과의 제재를 받을 경우 전체량 출하정지

- 호도 : 충실도 40% 이하과, 쪽정이고, 파쇄과(부서진과)를 제외

- 은행 : 파쇄과, 발아과 제외

- 유자 : 무농약재배 이상 , 완숙과, 지름 5cm 이상 출하.

과피와 과육이 무르거나 변질된 것, 심한 병해충과 제외.

- 대추 : 무농약 재배 이상, 열과 제외, 생대추는 착색이 양호해야 함.

※ 기타 게재되지 않은 과일은 전국과수위원회 생산·출하기준의 공통기준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.

2009년 12월 18일 전국대의원총회 개정  
2013년 1월 9일 생명농업실천위원회 승인  
2014년 1월 6일 생명농업실천위원회 승인